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31
----------	-------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자 : 강명구 · 강승규 · 우재준
박준태 · 이달희 · 임종득
김태규 · 조지연 · 김태호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